

# 202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개정 정오표 [2025.5.12]

2024년 9월 26일 발행 제4과목 건축 에너지효율설계 · 평가가 2025년 5월 8일부로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래 에너지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제1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해당 페이지	내 용
법제처	<p>[참고] 에너지 관계법령</p> <p>건축물에너지 관계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으셔서 참고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5.1.1)</li> <li>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1.1)</li> <li>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5.1.1)</li> <li>4. (한국에너지공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운영규정(시행 2025.3.11)</li> </ol>
3p	<p><b>규칙 제1조 【목적】</b></p> <p>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항에서 위임된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b>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p>
4p	<p><b>규칙 제2조 【적용대상】</b></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21. 8. 23.&gt;</li> <li>2. 삭제 &lt;2021. 8. 23.&gt;</li> <li>3. 삭제 &lt;2021. 8. 23.&gt;</li> <li>4. 삭제 &lt;2021. 8. 23.&gt;</li> <li>5. 삭제 &lt;2021. 8. 23.&gt;</li> </ol>
6p	<p><b>규칙 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b>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b>(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1.20., 2024.12.23.&gt;</li> <li>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18.&gt;</li> <li>③ 운영기관은 <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b>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li> <li>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li> <li>3. <b>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b></li> </ol> </li> </ol>

	<p>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li> <li>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li> <li>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li> <li>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li> <li>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li> <li>9.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li> </ol> <p>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li> <li>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li> </ol> <p>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lt;신설 2015.11.18., 2024.7.10.&gt;</p>
<p>8p</p>	<p><b>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b>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b>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1.20., 2024.12.23.&gt;</li> <li>② <b>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b>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li> <li>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ol> </li> </ol>
<p>9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li> <li>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24.7.10.&gt;</p> <p>④ <b>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b>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b>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b>8명</b>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li> <li>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b>5년</b>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b>5년</b>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b>7년</b>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li> <li>8. <b>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b></li> </ol> <p>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개정 2024.12.23.〉</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li> <li>2.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li> <li>4.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li> <li>5.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li> <li>6.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li> </ol>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del>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del>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u>〈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u></p> <p>⑦ <del>삭제</del> <u>〈2024.12.23.〉</u></p> <p>⑧ <del>삭제</del> <u>〈2024.12.23.〉</u></p>
<p>13p</p>	<p><b>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 <del>및 제7항</del>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del>제2호서식 또는</del> 제2호의 2서식의 <del>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u>〈개정 2017.1.20., 2024.12.23.〉</u></li> <li>② 제4조제6항 <del>및 제7항</del>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u>제1항에 따라</u>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u>〈개정 2017.1.20., 2024.12.23.〉</u></li> <li>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del>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del> <u>〈개정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u></li> <li>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u>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u> <u>〈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li> <li>2. 건축물의 소재지</li> <li>3. <u>상근 인증업무인력</u></li> </ol> </li> <li>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u>〈개정 2015.11.18.〉</u></li> <li>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개정 2024.7.10.〉</u></li> </ol>
<p>17p</p>	<p><b>규칙 제6조 【인증 신청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법 제17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u> <u>〈신설 2017.1.20.〉</u></li> <li>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u>〈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주</li> <li>2. 건축물 소유자</li> <li>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li> </ol> </li> </ol>

에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23.〉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3. 건물 전개도
    - 4. 장비용량 계산서
    - 5. 조명밀도 계산서
    -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자. 카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식 원격감침계량기 설치도서
    -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카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2024.12.23.〉
  -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p>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5.11.18., 2017.1.20.&gt;</p> <p>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lt;신설 2015.11.18., 2017.1.20.&gt;</p> <p>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lt;신설 2015.11.18., 2017.1.20.&gt;</p>
<p>28p</p>	<p><b>규칙 제7조 【인증평가 등】</b></p> <p>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18.&gt;</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lt;개정 2015.11.18.&gt;</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b>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9p</p>	<p><b>규칙 제8조 【인증기준 등】</b></p> <p>①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b>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4.12.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b>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li> <li>2. <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 다음 각 목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b></li> <li>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률</li> <li>3. <b>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b></li> <li>다. <b>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b></li> </ol> </li> </ol> <p>② 삭제 &lt;2024.12.23.&gt;</p> <p>③ <b>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b>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lt;개정 2024.12.23.&gt;</p>
<p>32p</p>	<p><b>규칙 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b></p> <p>①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b>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b>제4호서식 또는</b>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gt;</p> <p>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b>별표 1 또는</b>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b>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b> &lt;신설 2024.12.23.&gt;</p> <p>③ <b>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b> &lt;개정 2024.12.23.&gt;</p> <p>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gt;</p>

	<p>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lt;신설 2015.11.18.&gt;</p>
<p>41p</p>	<p><b>규칙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b></p> <p>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gt;</p> <p>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lt;개정 2024.12.23.&gt;</p> <p>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lt;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gt;</p> <p>④ <del>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del>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24.7.10.&gt;</p> <p>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lt;개정 2015.11.18.&gt;</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lt;개정 2015.11.18., 2017.1.20.&gt;</p>
<p>48p</p>	<p><b>규칙 제12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b></p> <p>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1.20., 2024.12.23.&gt;</p> <p>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7.1.20.&gt;</p> <p>③ 삭제&lt;2015.11.18.&gt; [제목개정 2015.11.18.]</p>
<p>49p</p>	<p><b>규칙 제13조 【인증수수료】</b></p> <p>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lt;개정 2015.11.18., 2024.7.10., 2024.12.23.&gt;</p> <p>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lt;개정 2015.11.18.&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p>

	<p>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gt;</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lt;개정 2015.11.18.&gt;</p>
<p>52p</p>	<p><b>규칙 제14조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b></p> <p>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del>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7. 1. 20, 2021. 8. 23., 2024.12.23.&gt;</p> <p>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21. 8. 23., 2024.12.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li> <li>2.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li> <li>3.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4.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del>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인증제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2024.12.23.&gt;</p> <p>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신설 2024.12.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li> <li>2.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lt;신설 2024.12.23.&gt;</p> <p>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lt;개정 2015.11.18., 2024.12.23.&gt;</p>
<p>66p</p>	<p><b>기초 제1조 【목적】</b></p> <p>이 규정은 「<del>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del>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69p</p>	<p><b>기준 제2조 【인증신청 보완 등】</b></p> <p>① 삭제</p> <p>②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p> <p>③ 규칙 제6조제5항·제6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준 제2조제2항,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b>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b></p>
<p>71p</p>	<p><b>기준 제4조 【인증기준 및 등급】</b></p> <p>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전문개정&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은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li> <li>2. <b>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2와 같다.</b> &lt;전문개정&gt;</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p> <p>③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등급의 세부기준은 해당 인증의 종류에 따라 <b>별표 2와 같다.</b></p> <p>④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p> <p>⑤ 규칙 제2조에 따른 <b>제로에너지건축물</b> 인증 평가에 적용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p>
<p>84p</p>	<p><b>기준 제5조 【재인증 및 재평가】</b></p> <p>① 규칙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규칙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하며,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축주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인증 또는 재평가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재평가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b>해당</b>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86p</p>	<p><b>기준 제6조 【인증 수수료】</b></p> <p>①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p> <p>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p> <p>③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li> <li>2.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li> <li>3.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li> <li>4.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인증신청을 반려하거나 건축주등이 인증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li> <li>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li> </ul> </li> </ol>

	<p>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주택 :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p> <p>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및 지자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에서 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등급</b>~3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li> <li>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li> <li>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li> </ol> <p>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b>제로에너지건축물</b>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92p</p>	<p><b>기초 제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b>40명</b>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li> <li>③ 위원장은 2년마다 교대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li> <li>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li> <li>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부교수 이상인 사람</li> <li>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li> <li>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li> <li>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ol> </li> </ol>
<p>93p</p>	<p><b>기초 제9조 【위원회의 운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b></li> <li>② <b>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li> <li>③ <b>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b></li> </ol>
<p>94p</p>	<p><b>기초 제10조 【운영세칙】</b></p> <p>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b>다만, 운영세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p>

<p>103p</p>	<p><b>규정 제1조 【목적】</b></p> <p>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b>」(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b>」(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 제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시 제10조에서 정한 시행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04p</p>	<p><b>규정 제2조 【적용범위】</b></p> <p>이 규정은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세칙으로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p>
<p>105p</p>	<p><b>규정 제3조 【정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차에너지"라 함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li> <li>2. "에너지요구량"이라 함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li> <li>3. "에너지소요량"이라 함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li> <li>4. <b>"에너지 총 소요량"이라 함은 에너지소요량에 에너지 순 생산량을 더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lt;신설 2021.3.30., 2025.3.11.&gt;</b></li> <li>5. <b>"에너지 순 생산량"이라 함은 건축물의 대지 내와 대지 외에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화석에너지소비량을 감한 에너지량을 말한다.</b></li> <li>6. "에너지자립률"이라 함은 인증 대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b>1차에너지 총 소요량</b>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b>1차에너지 순 생산량</b>의 비율을 말한다.</li> <li>7.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b>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li> <li>8.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인증신청, 수수료납부, 접수, 평가, 인증서 발급, 민원처리, 인증통계, 민원관리, 인증기관 관리 등 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li> </ol>
<p>107p</p>	<p><b>규정 제4조 【신청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 대상 건축물의 신청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를 받은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평가는 사용용도로 <b>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lt;개정 2025.3.11.&gt;</b></li> <li>3.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전기, 열 등의 에너지 공급계획 등에 따라 신청 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단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 또는 세대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li> </ol> </li> <li>② <b>공단은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 신청 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이 공단과 협의하여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lt;개정 2020.8.4., 2025.3.11.&gt;</b></li> </ol>

108p  
~109p

**규정 제5조 【신청 및 인증절차】**

- ① 인증 신청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공단**은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2.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 제출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후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라 인증 신청 접수 시 고시 **별표1에 따른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토록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4. 추후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발전 대지 및 건축물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접수·평가하는 건축물(이하 “평가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 등급 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른 단열조치 일반사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설계조건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1.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자
  - 2. 「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동등한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권자
- ③ 삭 제
- ④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평가건축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과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112p

**규정 제7조 【인증평가 세부기준】**

- ①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및 **에너지 총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용도프로필과 기상데이터는 각각 **별표 2, 별표 6과** 같으며, 등급 및 에너지자립률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 총 소요량 및 1차에너지 순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에너지 총 소요량 및 에너지 순 생산량에 별표 3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와 별표 2의 용도별 보정계수, 제7조의2에 따른 신기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8.4., 2021.3.30., 2025.3.11.>
- ② **벽·바닥·지붕·창 등의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제6조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KOLAS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5.3.1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해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인정하여 해당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8.4.>
- ④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은 인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에너지 중 인증평가 대상 건축물에 직접 공급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3.30., 2025.3.11.>
- ⑤ **공단은 인증기관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 시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에너지평가사의 현장실사 참여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신설 2025.3.11.>
- ⑥ **공단은 인증기관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 시 단위세대의 기밀성을 측정 후 그 결과가 인증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며, 세부적인 기밀성 측정방법은 공단 녹색건축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u>〈신설 2025.3.11.〉</u></p> <p>⑦ <u>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축에너지관리시스템은 별표 7의 항목 구분에 따라 인증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연면적 10,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은 별표 7의 에너지소비현황 분석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u>  <u>〈신설 2025.3.11.〉</u></p> <p>⑧ <u>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녹색건축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작성기준을 따른다.</u>  <u>〈신설 2025.3.11.〉</u></p>
<p>120p</p>	<p><b>규정 제7조의2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b></p> <p>① 제7조의 인증평가 세부기준에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신기술의 적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설명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평가 세부기준 적용을 요청받은 경우 별표4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매 6월, 12월 말을 기준으로 신청 건을 취합하여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술위원회에 기술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25.3.11.〉</u></p> <p>③ <u>공단은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선, 인증평가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u>  <u>〈개정 2025.3.11.〉</u></p> <p>④ <u>삭제 〈2025.3.11.〉</u>  <u>[본조신설 2020.8.4.]</u></p>
<p>126p</p>	<p><b>규정 제8조 【인증업무 운영비용】</b></p> <p>① 공단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8%를 차년도 운영비용으로 활용한다.</p> <p>② <u>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운영비용을 공단이 요청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3.11.〉</u></p> <p>③ 공단은 운영비용을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p> <p>④ <u>공단은 인증기관에서 기 납부한 운영비용 중 수수료의 환불 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운영비용 산출 시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1.〉</u></p> <p>⑤ <u>공단은 사업운영기간 종료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신규예산 편성시 수입으로 반영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3.11.15.〉</u></p>
<p>127p</p>	<p><b>규정 제9조 【인증기관 및 인증결과 사후관리 등】</b></p> <p>① 공단은 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 및 인증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연간 사후관리 일정, 범위, 방법, 예산 등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연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2단계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본 검사</li> <li>2. <u>교차 검사 〈개정 2023.11.15.〉</u></li> </ol> <p>③ 표본 검사는 사후관리 대상 기간 내 인증기관이 수행한 인증물량의 5% 내외의 범위에서 표본을 정하여 인증결과를 검사한다.</p> <p>④ <u>교차 검사는 제3항에서 선정된 표본 중 용도·규모 등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1개 이상 선정하여 인증기관 간 교차 평가하도록 하여 인증결과를 비교·검사한다.</u>  <u>〈개정 2023.11.15., 2025.3.11.〉</u></p> <p>⑤ 공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 다음 차수의 사후관리 시 <u>해당 인증기관의</u> 표본을 5% 할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8.4., 2025.3.11.〉</p>

- ⑥ 공단은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결과의 검사 업무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선정된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공단은** 인증기관이 제6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위탁기관은** 업무 위탁을 받은 날부터 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한** 인증결과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 지정한 기관 또는 전문가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등 공단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29p

**규정 제10조 【인증기관 감독 등】**

- ① **공단은** 인증기관이 사업주체이거나 관련용역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해당 인증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인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 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인증기관이 관계법령 및 고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부적절한 인증 업무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 인증기관 의견수렴(소명)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조치요구(처분)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통보된 처분의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처분) 중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인증기관 또는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을 건의**하여야** 한다.

131p

**규정 제11조 【실무교육의 시행】**

- ① 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평가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1.3.30., 2023.11.15.>**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공단은 연간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3.11.15.>**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건축물에너지평가에 관한 이론, 관계법령 및 직업윤리 등을 교육하는 **공통훈련과정과** 건축물에너지평가에 관한 실무를 교육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ECO2 모의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실무훈련과정은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 ④ 실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과정별 개별이수가 가능하다. **<신설 2023.11.15.>**
  - 1. **공통훈련과정(이하 “공통훈련”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실무훈련과정(이하 “실무훈련”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공통훈련과정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으로 실무훈련 개시일로부터 차월 기산일까지를 1개월로 한다. 그 밖의 기간 산정방법은 「민법」 제160조 및 제161조를 준용한다.**

**규정 제12조 【실무훈련의 시행】**

- ① 공단은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실무훈련에 협조하는 인증기관(이하 “실무훈련 협조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사에 대한 실무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실무훈련 협조기관은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중 1인을 실무훈련 교육지도관으로 지정한다.
  - 1. **실무훈련 교육 개시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p>2. 평가사 자격증 사본</p> <p>3. 실무훈련 교육 보안 각서(별지 제3호서식)</p> <p>② 공단은 교육수강자가 실무훈련 교육기간 중 질병,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훈련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훈련 교육 중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실무훈련 협조기관으로부터 확인한다.</p> <p>③ 공단은 교육수강자가 제2항에 따른 실무훈련 중지 신청 전까지 1개월 이상의 실무훈련을 받은 경우 실무훈련 중지 신청 전까지의 기간을 실무훈련 교육 기간으로 인정하며,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월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p> <p>④ 공단은 실무훈련 협조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실무훈련의 중지 및 재개시 등 평가사 실무훈련 교육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확인한다.</p> <p>[본조신설 2023.11.15.]</p>
<p>136p</p>	<p><b>규정 제12조의2 【실무훈련의 평가】</b></p> <p>① 공단은 실무훈련 협조기관이 교육수강자의 실질적인 평가 업무를 습득을 위하여 실무훈련 교육기간 중 4건 이상(주거용 2건, 주거용 이외 2건)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lt;개정 2025.3.11.&gt;</p> <p>② 공단은 실무훈련 협조기관이 교육수강자의 모의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모의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며, 모의평가 결과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실무훈련 협조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공단은 교육수강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에 실무훈련 교육지도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실무훈련 협조기관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p> <p>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수강자의 실무훈련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무훈련 협조기관으로부터 실무훈련 교육 연장기간 및 평가계획을 확인한다. [본조신설 2023.11.15.]</p>
<p>139p</p>	<p><b>규정 제12조의3 【실무훈련의 종료】</b></p> <p>공단은 실무훈련 협조기관의 실무훈련 교육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무훈련 교육 종료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li> <li>2. 실무훈련 교육 평가사 출근부(별지 제6호서식)</li> <li>3. 모의평가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및 모의평가서</li> </ol> <p>[본조신설 2023.11.15.]</p> <p><b>규정 제13조 【실무교육의 종료】</b></p> <p>공단은 공통훈련 및 실무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한 평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증을 교부한다. &lt;개정 2023.15.15.&gt;</p> <p>[제목개정 2023.11.15.]</p>
<p>140p</p>	<p><b>규정 제14조 【인증업무인력 관리】</b></p> <p>①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사를 소속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lt;개정 202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사 소속·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li> <li>2. 평가사 자격증 사본</li> <li>3.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소속의 경우)</li> <li>4. 실무교육 수료증(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li> </ol> <p>② 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251호, 2015.11.18.)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평가사를 소속 또는 등록</p>

	<p>하려는 <b>경우</b> 해당 평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b>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수료증을 대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 &lt;개정 2020.8.4., 2025.3.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사 자격 취득 전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증기관이 작성한 인증 평가 경력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li> <li>인증 평가 경력 확인서의 인증 평가 기간 동안의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li> <li><b>공단은</b> 평가사로 하여금 복수의 인증기관에 소속 또는 등록할 수 <b>없도록 하며, 인증기관으로 하여금</b> 소속 또는 등록 평가사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b>보고하도록 한다.</b> &lt;개정 2025.3.11.&gt;</li> </ol>
<p>146p</p>	<p><b>규정 제16조 【공단과 인증기관의 상호협력 및 지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은 규칙 제3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인력 지원 및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의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li> <li><b>공단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b> 인증평가 세부지침 개발, 인증제도 홍보 등 <b>제로에너지 건축물</b> 인증 제도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한다. &lt;개정 2021.3.30., 2025.3.11.&gt;</li> <li>공단은 인증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7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li> </ol>
<p>146p</p>	<p><b>규정 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 제14조에 의한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규칙 제4조제6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기인증기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하여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를 마친 후 인증업무에 착수한다. &lt;개정 2025.3.11.&gt;</li> <li>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li> <li>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b>위원회 관리</b> 규정에 따른다. &lt;신설 2020.10.20., 2025.3.11.&gt;</li> </ol>
<p>147p</p>	<p><b>규정 제18조 【기술위원회 운영】</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공단은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 제14조제4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인증제도 협의체(이하 “협의체”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b> &lt;개정 2025.3.11.&gt;</li> <li><b>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방법</li> <li>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적용 및 평가 방법의 적합성</li> <li>그 밖에 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li> <li>삭제</li> <li>삭제</li> <li>제2항에 따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li> </ol>
<p>148p</p>	<p><b>규정 제19조 【보칙】</b>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2편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해당 페이지	내 용
177p	<p><b>고시 제4조 【적용예외】</b></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b>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del>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del>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b>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b>」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li> <li>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li> <li>8. 제21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ol>
182p	<p><b>고시 제5조 【용어의 정의】</b>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li> <li>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li> <li>3. <del>“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del></li> <li>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b>」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li> <li>5.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li> <li>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li> <li>7.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b>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b>,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li> <li>9.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축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b>,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li> <li>14.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li> <li>15.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li> <li>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17.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li> <li>18.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li> <li>19.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li> <li>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관리되는 것을 말한다.</li> </ol>
<p>248p</p>	<p><b>고시 제26조 【운영규정】</b></p> <p>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250p</p>	<p><b>고시 제1조 【시행일】</b></p> <p><b>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p> <p><b>고시 제2조 【경과 조치】</b></p> <p>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li> <li>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li> <li>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li> <li>4. 종전의 규칙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b>」 제11조에 따른 <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b></li> </ol>

[제3편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해당 페이지	내 용
380p	<p>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del>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del>,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p>